

#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

의안 번호	43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4월 3일

발 의 자 : 장문혁 의원

찬 성 자 : 함명섭, 박종욱,  
이범연, 박찬원,  
임영순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,
  - 2018. 6. 13.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,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하반기(9월·10월)로 변경하고자 하며,
- 변경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제8대 의회에서 따로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1차 정례회 집회일

당 초	변 경
2018년 6월 10일	2018년 9월 · 10월 중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

▪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

제7조(집회시기 변경) ① 의장은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·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·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·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.